

人 權 法 案

議案 番號	
----------	--

提出年月日：1999. 4.
提出者：政府

提案理由

우리나라는 그동안 秩序維持에 중점을 둔 나머지 人權保障에 疏忽함이 없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거에 國家權力에 의한 人權侵害事件을 經驗하였음.

이제 秩序와 人權이 함께 존중되는 先進民主社會를 指向함에 있어서 人權에 관한 基本法이 制定될 時期에 이르렀고, 특히 國家權力에 의한 人權侵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民間監視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또한 人權侵害行爲중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男女雇傭平等法 등 個別法律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차별행위의 禁止·救濟를 새로이 規定할 필요가 있음.

이法案은 이러한 人權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國家權力에 의한 人權侵害의 監視·救濟,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禁止·救濟를 規定하고, 國家의 人權保障機能에 虛點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監視·救濟·補完할 國民人權委員會의 設置를 法制化하기 위한 것임.

이 法의 制定으로 國內的으로 人權狀況이 劃期的으로 개선되어 人間의 尊嚴과 價值가 존중되는 先進民主社會가 具現되고, 國際的으로는 人權先進國家로서의 國家的 이미지가 확고히 構築되기를 기대함.

主要骨子

가. 이 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을 防止·救濟하고 人權意識을 高揚함을 目的으로 함(案 第1條).

나. 이 法은 ①人權에 관한 教育과 弘報 ②人權의 擁護와伸張을 위한 制度 등의 개선 ③人權侵害(차별행위 포함)에 대한 신속한 調查와 救濟 등의 實踐을 基本方針으로 정하고, 이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한 責任을 國家에, 이를 監視·補完하는 責任을 國民人權委員會에 賦課함(案 第2條).

다.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外國人에게 적용함(案 第4條).

라. 法務部·外交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特別委員會 등 中央行政機關 등이 人權의 擁護와伸張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役割을 規定함(案 第6條 및 第7條).

마. 性別, 宗教, 年齡, 障碍, 社會的 身分, 人種, 皮膚色, 出身國家, 出身民族, 出身地域, 出身學校, 容貌 等 身體的 조건,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에 기하여 雇傭과 財貨·用役·交通手段 및 商業施設 등의 供給 또는 이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特定人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되, 「人種侮辱」과 「性戲弄」을 차별행위의 特수한 類型으로 規定함(案 第8條 내지 第10條).

바. 國民人權委員會의 設立·業務·組織 및 운영과 國家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함.

(1)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고 함)를 法人으로 設立함(案 第11條).

(2) 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하도록 함(案 第12條).

(3) 委員會는 ①人權에 관한 教育과 弘報 ②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研究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③搜查機關 등의 人權侵害行爲와

차별행위 全般에 대한 調査와 救濟 ④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⑤人權狀況에 관한 實態조사 ⑥人權侵害의 類型・判斷基準과 그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제시 및 권고 ⑦人權의擁護와伸張을 위하여活動하는團體 및 개인과의協力 ⑧人權關聯 國際機構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그業務로 함(案第16條).

(4) 委員會는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 등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며, 委員會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등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도록 함(案 第18條 및 第19條第2項).

(5) 委員會는 매년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大統領과 國會에 보고하고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며,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도록 함(案 第20條).

(6) 委員會의 委員은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이 추천하는 각 3人을 포함하여 9人을 大統領이任命하고,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任命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4人の委員은 常任으로

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하며, 委員중 3人이상은 女性으로
任命하도록 함(案 第21條 및 第24條).

(7) 委員會의 業務중 일부를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の
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함(案 第22條).

(8) 事務處는 事務總長 및 職員으로 구성하며, 事務總長은 委員
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職員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任免하도록 함(案 第29條).

(9) 委員會의 요청이 있을 경우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
體 등은 公務員을 委員會에 派遣할 수 있도록 하고, 委員會
에 派遣된 公務員은 소속 國家機關 등으로부터 獨立하여 委
員會의 業務를 수행하도록 함(案 第37條).

(10) 委員會의 豫算은 政府出捐金과 民間寄附金으로 충당하도
록 함(案 第38條第1項 및 第39條).

사. 委員會는 陳情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人權
侵害行爲를 조사할 수 있음(案 第40條).

(1) 搜查機關 등의 職員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職員이 그 業
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행위

(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
위

- (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행위
- (다)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 (라)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他人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摄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누설하는 행위
- (마)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행위
- (바) 사람에 대하여 暴行·脅迫·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 사람을 公然히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 (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 (2) 搜查機關 등의 職員과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職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위 (1)의 (가) 내지 (아)에 해당하는 행위
-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 아닌 政府機關의 公務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위 (1)의 (바)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公務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위

(1)의 (바)에 해당하는 행위(다만, 이 경우의 調査에는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議決을 요함)

(4) 차별행위 全般(性戲弄과 人種侮辱 포함)

아. 委員會의 調査方法으로 陳述書 제출 要求權, 出席要求權, 陳述聽取權, 鑑定依賴權, 關係資料 등 제출 要求權, 제출된 資料·物件의 領置權, 實地調查權 등을 規定함(案 第47條).

자. 調査結果에 따른 處理는 다음과 같이 함(案 第44條, 第51條 내지 第59條).

(1) 緊急救濟措置 권고 —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이고 회복곤란한 被害가 예상되는 경우 最終決定 이전에 해당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등 적절한 救濟措置를 권고

(2) 合意勸告 — 人權侵害行爲가 있었다는 蓋然性이 인정될 경우 當事者間의 合意를 권고

(3) 調停 — 原狀回復 · 損害賠償 등에 관한 調停이 成立한 경우 裁判上和解의 효력을 인정하고, 필요시 委員會의 職權으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가능

(4) 法律救助 — 被害者를 위하여 大韓法律救助公團 등에 法律救助를 요청

(5) 救濟措置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 人權侵害行爲가 인정

되는 경우 被陳情人 등에 대하여 해당행위의 중지, 原狀回復 · 損害賠償 등 필요한措置를 권고하거나 委員會의 의견을 표명

- (6) 告發 또는 搜查依賴 — 犯罪行爲에 해당하거나 그 蓋然性이 인정되는 경우 檢察總長 등에게 告發 또는 搜查依賴
 - (7) 관계 法令 · 制度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 調查過程에서 人權關聯 法令 · 制度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國家機關의 長에게 그에 관한 권고나 의견을 表明
 - (8) 關係機關에의 移送 —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機關에 移送
 - (9) 陳情의 却下 — 陳情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한 경우(다만, 1年이 경과한 경우라도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는 調査할 수 있음),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우 등
 - (10) 陳情의 棄却 — 調査結果 陳情이 사실이 아니거나 별도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차. 委員會는 人權關聯 法令 · 制度 등의 개선, 國際人權條約의 加入 및 이행, 拘禁 · 保護施設의 개선, 人權侵害行爲의豫防措置,

緊急救濟措置, 調查結果에 따른 救濟措置 등의 권고와 委員會로부터 권고 등을 받은 관계 國家機關의 措置結果 등 통보 내용을 公表할 수 있음(案 第63條).

카. 委員會로부터 勸告·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國家機關·團體의 長 등은 그 勸告·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國家機關 등의 長이 委員會의 권고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案 第64條).

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罰則과 過怠料를 規定함.

(1) 人權委員 및 職員의 業務遂行 방해, 委員會에 대한 허위사실의 陳情, 委員會에 대한 陳情書 작성 및 제출 방해, 人權委員 등 資格詐稱, 秘密漏泄, 賂物收受, 職權濫用, 政治關與 등에 대하여는 刑事處罰하도록 함(案 第68條 내지 第74條).

(2) 委員會의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委員會의 출석요구 또는 資料提出 등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委員會에 허위의 資料 등을 제출한 경우, 委員會의 實地調查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하여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하도록 함(案 第75條).

파.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하되, 設立委員 位
촉 등 設立準備에 관한 사항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도록 함(案
附則 第1條).

人權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을 방지·救濟하고 人權意識을 高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方針) ①이 法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號의 사항을 實踐함을 基本方針으로 하며, 國家는 이 基本方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意識의 鼓吹를 위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 및 慣行의 개선
3. 人權侵害에 대한 신속한 調查와 救濟
4.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필요한 措置

②國民人權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하여 國家機關의 活動을 監視·補完한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

의 자유와 權利를 말한다.

2. “矯正機關 등”이라 함은 矯導所 · 少年矯導所 · 拘置所 · 保護監護所 · 治療監護所 · 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查院을 말한다.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라 함은 檢察 · 警察 · 國家情報院 · 矯正機關 등 · 保護觀察所 및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에서 規定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하는 者, 軍檢察 · 憲兵 · 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 및 軍務員을 말한다.
4.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보호 · 收容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5. “拘禁 · 保護施設”이라 함은 警察署 留置場 · 矯正機關 등 · 外國人保護所 · 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倉을 포함한다) 및 多數人保護施設을 말한다.

第4條(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外國人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2章 國家機關의 人權保障 義務와 役割

第5條(國家機關의 義務) 모든 國家機關은 法令의 制定과 改正 및 政策의 수립에 있어서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하며 그 執行過程에서 개인의 人權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法務部의 役割)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政府의 綜合計劃 수립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각 部處間의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지원
4.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②法務部長官은 매년 6月 30日까지 國民人權委員會의 권고·告發 및 搜查依賴와 이에 대한 國家機關 등의 措置結果 등을 綜合하여 人權狀況을 分析하고 그 改善對策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條(關係中央行政機關 등의 役割) ①外交通商部長官은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活動에의 參加, 在外國民의 人權侵害의 豫防과 救濟를 통하여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教育部長官은 初·中等教育法에 의한 各級 學校의 教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教育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障礙人·老人·兒童 등 社會的 弱者의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設에서 人權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雇傭의 촉진과 勤勞條件의 향상을 통하여 勤勞者의 人權을 伸張하도록 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 ⑤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女性에 대한 차별행위를豫防하고 개선하는活動을 통하여 女性人權의擁護와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⑥기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강구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3章 차별행위의 금지

第8條(차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性別(出產 또는 嫣娠을 포함한다), 宗敎, 年齡, 障碍, 社會的 身分, 人種, 皮膚色, 出身國家, 出身民族, 出身地域, 出身學校, 容貌 등 身體的 조건,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에 기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集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優待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優待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모집, 採用, 教育, 配置, 升進, 賃金 및 賃金외의 金品 지급,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 · 排除 · 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2. 財貨 · 用役 · 交通手段 · 商業施設 · 土地 · 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 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 · 排除 · 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

하는 행위

3.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行위

第9條(人種侮辱)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이용 또는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行위는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10條(性戲弄) 男女差別禁止 및 救濟에 관한法律 第2條第2號에 規定한 性戲弄은 性別에 基한 차별행위로 본다.

第4章 國民人權委員會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1條(設立) ① 차별행위를 포함한 人權侵害를 調查·救濟하고 기타 人權의擁護와伸張에 관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委員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12條(獨立性) ①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手行 한다.

②委員會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3條(事務所) ①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4條(定款) ①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財產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事務處에 관한 사항
8.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变경에 관한 사항
10. 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定款을 变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在籍 人權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하여야 한다.

第15條(登記) ①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6條(業務)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에 관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立法過程중에 있는 法令案을 포함한다) · 制度 · 政策 · 慣行의 研究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3. 搜查機關 등의 人權侵害行爲에 대한 調査와 救濟

4. 차별행위에 대한 調査와 救濟

5.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의 지원

6.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및 그 條約의 이행에 관한 研究와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7. 國家機關이 요청하는 人權에 관한 研究와 諮問

8. 拘禁 · 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9. 人權狀況에 관한 實態調査

10. 人權侵害의 類型 · 判斷基準 및 그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제시 및 권고

11.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개인과의 協力
12.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 · 協力
13. 第1號 내지 第12號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業務

第17條(拘禁 · 保護施設의 視察) ①委員會는 人權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人權委員으로 하여금 第16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職員 및 專門家를 同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内보여야 한다.

⑤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禁 · 保護施設을 視察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表明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施設의 長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18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委員會는 第16條에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 · 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第19條(권고 등의 相對方 및 권고에 대한 尊重義務) ①第16條第2號 · 第6號 · 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은 관계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 · 私團體에 대하여 이 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등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20條(年例報告書 등) ①委員會는 매년 3月 31日까지 委員會의 前年 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大統領과 國 會에 보고하고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例報告書를 國民에게 公表하여 야 한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特別報告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組織 및 운영

第21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の 人權委 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4人の 委 員은 이를 常任으로 한다.

②委員은 社會的 信望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이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委員중 3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추천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중 3人이상은 女性으로 任命한다.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長과 大法院長이 委員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각 1人이상의 女性이 포함되도록 하고, 常任委員 각 1人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委員長 및 委員이 任期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第22條(小委員會) ①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の 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定款의 변경, 豫算 및 決算, 規則의 制定 및 改廢, 財產의 취득·처분 및 변경 등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第17條第3項, 第28條第2項 但書, 第29條第4項, 第40條第3號 但書, 第44條第1項第1號 但書 및 第6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
3. 委員會의 종전 議決例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 사항

5. 기타 委員會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23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그 會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委員長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는 常任委員은 그의 이익과 委員會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委員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常任委員이 委員會를 代表한다.

第24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5條 (委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教育公務員을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②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第26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身體상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遂行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刑의 宣告, 懲戒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27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小委員會의 會議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지명하는 者가 會議를 主宰한다.

第28條(委員의 除斥 · 기피 · 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 · 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陳情의 當事者 (陳情人 · 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당해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長은 當事者の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決定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決定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29條(事務處의 設置)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事務總長을 제외한 職員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任免한다.

⑤事務總長은 委員長의 명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소속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30條(懲戒委員會의 設置) ①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懲戒委員會를 둔다.

②懲戒委員會의 구조, 權限, 審議節次, 懲戒의 종류 및 효력 기타 懲

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1條(職員의 身分保障) 委員會의 職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退職·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32條(資格詐稱의 금지)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秘密漏泄의 금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業務處理中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유사명칭사용의 금지)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5條(代理人의 選任) 委員長은 委員과 職員중에서 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6條(委員會의 組織·운영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組織·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國家의 지원 등

第37條(公務員 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派遣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協議하여 그 소속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派遣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派遣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派遣된 者에 대하여 人事 · 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出捐金의 교부) ① 國家는 委員會의 設立 · 施設 · 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을 교부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매년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調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요구 ·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財產의 寄附) ① 法人 · 團體 및 개인은 委員會의 施設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委員會에 金錢 기타 財產을 寄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받은 財產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第5章 調査와 救濟의 節次

第40條(委員會의 調査對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行爲(이하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라 한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搜查機關 등의 職員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職員이 그 業務遂行 과 관련하여 행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行爲
 - 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行爲
 - 나.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行爲
 - 다.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行爲
 - 라.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他人的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摄影 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누설하는 行爲
 - 마.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 · 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 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行爲
 - 바. 사람에 대하여 暴行 · 脅迫 · 拷問 등 苛酷한 行爲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行爲
 - 사. 사람을 公然히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行爲
 - 아.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行爲
2. 搜查機關 등의 職員과 共犯關係에 있는 者가 그 職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行爲

3. 搜查機關 등의 職員이 아닌 政府機關의 公務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행한 第1號바目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共犯關係에 있는者が 그 公務員의 業務와 관련하여 행한 第1號바目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委員會가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4.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차별행위

第41條(陳情人의 適格)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者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第42條(陳情의 方式)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特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취지와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

第43條(拘禁 · 保護施設 收容者 등의 陳情權 보장) ①拘禁 · 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보호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拘禁 · 保護施設의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書의 작성을 허용한 職員은 그 陳情書를 委員會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를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4條(陳情의 却下) ①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당해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議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취하한 경우
7. 陳情의 취지가 당해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반하는 경우
8.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事案에 관하여 搜查, 裁判, 行政審判, 國會의 國政監查나 國政調查, 憲法裁判所의 審判이나 憲法訴願, 監查院의 監查,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苦衷民願 調查, 女性特別委員會의 男女差別事項 調查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우
9. 委員會가 棄却한 陳情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陳情한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調查를 開始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한 경우 그 陳情人은 그 却下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委員會에 다시 陳情할 수 있다.

第45條(調查의 開始) ①委員會는 陳情이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6條(調查의 目的) ①委員會의 調査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적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機關의 機能遂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증인 裁判 또는 搜查증인 事件의 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目적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7條(調查의 方法) ①委員會는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제출요구
2.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聽取
3. 鑑定人の 지정 및 鑑定의 의뢰
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團體 등에 대한 關係資料

나 물건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②委員會는 調查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이나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係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하여 實地調查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陳情人·參考人 또는 被陳情人의 陳述을 聽取하게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地調查를 받는 機關·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을 領置할 수 있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당해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8條(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委員會가 第47條第1項第4號, 同條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國家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資料·물건 또는 施設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다.

1. 公開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搜查·裁判·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물건으로서 公開하면 다음各目的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진행중인 犯罪搜查 또는 繫屬중인 裁判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事件關係人の 名譽나 私生活의 秘密 또는 生命·身體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資料·물건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9條(陳情의 移送) ①委員會는 陳情에 관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

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機關은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移送받은 陳情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0條(調查의 중지)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の 所在不明 또는 疾病 기타의 사유로 調查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解消될 때까지 調査를 중지할 수 있다.

第51條(緊急救濟措置의 권고) ①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蓋然性이 있고, 이를 放置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被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決定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の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다음 각號의 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務로부터의 排除

3. 기타 被害者の 人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措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

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권고를 받은 때부터 48時間이내에 그措置結果나措置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2條(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하는 過程에서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었다는 蓋然性이 인정될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권고할 수 있다.

第53條(調停節次의 開始) ①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陳情을 調停에 회부할 수 있다.

②被害者와 被陳情人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調停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調停) ①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동일 또는 유사한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재발방지를 위한 措置
3. 原狀回復 ·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④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被害者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송달된 날부터 2週日이내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55條(調停의 효력) ①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劝言할 수 있다.

第56條(法律救助) ①委員會는 第5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被害者の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를 위하여 大韓法律救助公團 기타 機關에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의 節次 · 내용 및 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救濟措置 등의 권고 및 意見表明)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고 救濟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4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하는 過程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 및 慣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58條(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9條(告發 및 搜查依賴)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소속 軍 參謀總長에게 告發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查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의뢰할 수 있다.

第60條(意見陳述機會의 부여) ①委員會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권고,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61條(決定의 통지) 委員會는 第4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중지,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濟措置의 권고,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要請,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意見表明,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2條(調查 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查·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63條(권고 등의 公表) ①委員會는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

고,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및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그 告發 또는 搜查依賴의 대상인 嫌疑事實을 제외하고 當事者·罪名·搜查機關名·告發 또는 搜查依賴 日字만을 公表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 등을 公表하는 경우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개인의 姓名을 匿名으로 하는 등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64條(措置結果 등의 통보) ①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7條第1項·第2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권고,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 檢察總長, 소속 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권고·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로부터 第16條第2號·第6號·第8號 및 第10號, 第51條第1項,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통보함에 있어서 委員會의 권고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65條(法務部長官에 대한 통보) 委員會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变경, 第16條第2號 · 第6號 · 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第57條第
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表明, 第59條의 規定
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
한 措置結果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法務部長官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第66條(職權調查의 경우 準用規定) 第46條 내지 第57條, 第59條 내지
第65條의 規定은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調查에 관하여 이
를 準用한다.

第67條(調查 · 處理節次 등)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調查
및 處理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六章 罰則

第68條(人權擁護業務妨害)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
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하는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을 暴行 또는
脅迫한 者
2.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에 대하여 그 業務상의 行위를 强要 또
는 求止하거나 그 職을 辞退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

3. 偽計로써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業務遂行을 방해한 者

第69條(虛偽陳情) 허위의 사실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0條(陳情書 작성 등 방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 작성을 허용하지 아니한 者

2.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書를 委員會에 송부하지 아니한 者

第71條(人權委員 등 資格詐稱)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2條(秘密漏泄)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處理중 知得한 秘密 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73條(賂物罪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74條(政治關與禁止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員法 第65條 및 第84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

으로 본다.

第75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1項第4號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 大統領은 이 法을 公布한 날부터 6月이내에 法務部長官의 추천으로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委員會의 設立에